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(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)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이사회 의장 선임 내역

구분	성명	직위
이사회 의장	파이잘 가푸어	기타비상무이사
선임사외이사	한백현	사외이사

2. 선임사유

- 파이잘 가푸어 의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활용하여 이사회 및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이사회 결의일(선임일)

- 2024년 5월 30일

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